

의 결



국민권익위원회

A C B C

국 민 권 익 위 원 회

의 결

의안번호 제2021 - 818호

의 안 명 「일상 속 불합리한 차별적 제도·관행 개선」

대상기관 환경부, 국립공원공단, 국방부·육군·해군

의 결 일 2021. 12. 20.

주 문

「일상 속 불합리한 차별적 제도·관행 개선」 방안을 별지와 같이 「부패방지 및 국민
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, 국립공원공단
이사장, 국방부장관, 육군·해군 참모총장에게 권고한다.

이 유

별지와 같다.

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2021년 12월 20일

위 원 장 전 현 희

위 원 안 성 옥

위 원 이 정 희

위 원 김 기 표

위 원 강 재 영

위 원 박 계 옥

위 원 박 홍 규

위 원 임 성 문

위 원 방 이 엽

위 원 손 난 주

위 원 강 길 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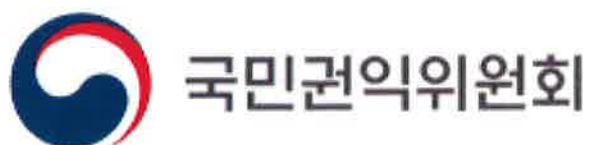
위 원 최 정 목

[별지]

국민권익위원회
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

일상 속 불합리한 차별적 제도 · 관행 개선

2021. 12.



A C R C

목 차

I. 추진배경	1
---------------	---

II. 문제점 및 개선방안	2
----------------------	---

1.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급 역차별 해소	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2. 국립공원 시설예약제도의 공정성 강화	6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3. 군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제도 운영의 형평성 제고	9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III.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	12
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I. 추진배경

<대통령 강조사항>

- ▶ '잘 살자' 꿈 이뤘지만, '함께'라는 꿈은 아직 멀어. 국민 단 한 명도 차별 받지 않는 나라 되어야('18.11.1.,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)
- ▶ '공정'은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, 제도 속 불공정, 관성화된 특혜 등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('20.9.19., 청년의 날 기념사)
- ▶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, 격차 해소에 대한 요구에 끊임없이 귀 기울일 것(2021 신년사, '21.1.11.)

- 최근 우리 사회는 다양한 양상의 갈등이 일시에 표면화되면서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차별, 특혜, 불공정에 대한 비판과 개혁 요구 증가

※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OECD 회원국 중 3위로 최상위권(전경련, '21.9월)

- 이에 따라, 국민이 생활 속에서 '공정'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의 '국민소통창구*'를 통해 표출된 차별적 제도와 그로 인한 국민 고충을 꼼꼼히 점검·제도개선 추진

* 국민콜110, 국민신문고, 국민생각함, 국민제안, 청와대 국민청원 등

-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서 불합리한 우선순위 규정으로 인해 성실하게 법령을 준수한 사람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역차별 발생
- 국립공원 야영장 일부 영지를 '예비영지' 명목으로 일반 예약자에 공개하지 않고 국립공원공단 내부 직원들이 특혜 이용
- 군무원 인사 법령에 따라 군무원 채용 시 의사상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에도, 4개 채용기관(국방부, 육·해·공군) 중 공군의 경우만 의사상자 가점을 인정

- 국가·사회에 기여한 의사상자 예우·지원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

- 그동안 해당 분야 제도에 내재해 있던 차별적 요인을 제거하고, 제도 혜택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



Ⅱ. 문제점 및 개선방안

1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급 역차별 해소

[환경부]

□ 현 황

- 정부·지자체는 특정경유자동차¹⁾ 등으로 인한 대기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,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'05년부터 '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'을 시행 중

※ 시행근거 : 「대기관리권역법」 §26, 「대기환경보전법」 §58 등

- (내용) 특정경유자동차 등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, 해당 차량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보조금*으로 지급

* 지자체 자본보조 방식으로 국비 50%(평택시 70%), 지방비 50%로 조성

- (지원금액) 대상 차량, 부착 장치의 종류 등에 따라 차이

<사업별 지원금액('21년도 기준)>

구 분	조 기 폐 차	매연저감장치(DPF/pDPF)
지원금액	▪ 차종·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(70~300%)을 곱한 금액을 차종별 상한금액* 범위 내에서 지원 * 300만원(3.5톤 미만)~4,000만원 (덤프, 콘크리트믹스트럭 등) 까지 차종별 차이	▪ 차량 종류별 매연저감장치 가격의 90%까지 보조금* 지원(자부담 10~12.5%) * 최대 632만원(복합대형)~최소 292만원(복합소형 RV, 승합) 까지 다양

- (지원규모) 최근 대기질 악화로 보조금 규모는 급격한 증가 추세

<보조금 예산 현황(국고 기준)>

(단위 : 억 원)

구 분	2017	2018	2019	2020
조 기 폐 차	642	858	2,268	2,134
매연저감장치(DPF/pDPF)	222	445	1,282	1,928
합 계	864	1,303	3,550	4,062

1)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(수도권, 광역시 및 도시지역)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.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

□ 문제점

○ 지원대상 선정의 형평성 저하

- 예산의 한계 등으로 조기 폐차,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사업의 연도별 사업량은 제한적²⁾
- ※ (민원내용)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지원하려 하였으나, 물량 제한으로 '연간 사업'이란 말이 무색하게 몇 일만에 마감되어 지원받지 못함(국민신문고, '17.2월)
- 이에 따라, '21년도 「**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**」 (환경부, '21.2월)에서 지원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나,
- '운행제한(계절관리제, 비상저감조치 등)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' 등을 우선 지원토록 함으로써 운행제한 법규를 성실하게 지킨 사람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역차별 문제 발생

< 지자체 공고 사례 >

(사례 1) ○○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

3. 지원대상자 선정기준(우선순위 : ①→⑤ 순)

- ①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으로 단속된 차량
- ② (생 략)
- ③ 총중량 3.5톤 이상이면서, 2002년 이전 제작·출고된 차량
- ④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(연식이 없는 차량은 차량등록일자 적용)
- ⑤ 차량연식이 동일한 경우 배기량이 큰 순

(사례 2) △△군 2021년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(DPF) 부착 지원사업 공고

6. 지원대상 선정 및 우선순위 기준

<우선순위 기준>

- ① 운행제한(계절관리제, 비상저감조치 등)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또는 유예 중인 차량
- ② 생계형차량 :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
- ③ 영업용 차량
- ④ 총중량 3.5톤 이상인 차량
- ⑤ (생 략)

※ 운행제한 위반 차량은 과태료 영수증, 사전통지 공문 제출

2) '21년도 전국 사업량은 조기 폐차 340천 대, 매연저감장치 부착 90천 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

- 불합리한 지원 우선순위 적용으로 인한 고충민원 빈발

< 관련 민원 사례 >

- 2006년식 경유 차량에 대하여 ○○군에 DPF 장착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함.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을 1순위로 지원하라는 지침으로 인해 탈락했다는 것인데, 사는데 어려워서 다른 차량을 구매하기도 힘들고... 허무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김(국민신문고, '21.7월)
-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였으나, 계절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고 안내받음. 법령을 어긴 사람이 우선 순위자로 결정되는 부분을 납득할 수 없음(국민콜 110, '21.3월)

□ 개선방안

- 우선순위 기준에서 '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(유예포함)을 받은 차량'을 제외

⇒ 「**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**」에 반영

< 개정(안) 예시 >

현 행	개 선 안
☐ 조기폐차 (우선지원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(예산의 30% 이상 지원) 가.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<u>운행제한(계절관리제, 비상저감조치 등)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과 제2차 계절관리제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유예받은 차량</u> 나. ~ 마. (생략)	☐ 조기폐차 (우선지원) _____ _____ _____ 가. <삭 제> 나. ~ 마. (현행과 같음)
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차량	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차량

(우선지원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 지원(예산의 30% 이상 지원)

가.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운행 제한(계절관리제, 비상저감조치 등)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과 제2차 계절관리제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유예받은 차량

나. ~ 다. (생략)

(우선지원) _____

가. <삭제>

나. ~ 다. (생략)

2 국립공원 시설 예약제도의 공정성 강화

[국립공원공단]

□ 현 황

- 국립공원공단(이하 “공단”)은 국립공원*의 건강한 자연환경 보전·관리, 지속 가능한 이용 등을 목적으로 야영장, 대피소 등의 공원시설을 설치·관리(「국립공원공단법」 제9조)

*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라 지정('21.7월 현재 총 22개)

- 공단이 설치·관리하는 국립공원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단 ‘예약통합시스템(<http://reservation.knps.or.kr>)’을 통해 해당 시설을 사전에 예약하여야 함

※ 매월 2회(1일, 15일) 온라인(모바일, PC)을 통해 예약신청을 받고 있으며, 예약 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

<국립공원 예약시설 현황>

구 분	시설 수	수용인원(숙박)	시설사용료*
야영장	40개(영지 2,792개)	8,376명 (영지 당 평균 3명 가정)	4.6천원 ~ 23천원 / 60천원 ~ 120천원(카라반)
대피소	20개	1,169명	7천원 ~ 13천원
민박촌	1개(객실 71개)	303명	30천원 ~ 130천원(실별)
생태탐방원	8개	710명	66천원 ~ 132천원(실별)
합계	69개	10,558명	-

* 시설사용료는 사용 시기(성수기 vs 비수기), 시설 규모, 사용 인원 등에 따라 상이

□ 문제점

- 야영장(카라반 포함) 일부 영지가 공개되지 않은 채 국립공원 시설 이용 원칙을 벗어나 편법적으로 운영
- 이른바 ‘예비영지’라는 명분으로, 일부 영지를 ‘예약통합시스템’을 거치지 않고 공단 내부 직원들이 이용



- 정상적인 예약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, **일반 국민(예약자)은 '예비 영지'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어** 예약제도 운영 투명성 저하

○ 또한 '**예비 영지**'에 대한 운영 근거, 운영 기준 등 예비영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**야영장별로 자의적 운영**

※ 예비영지 운영현황 : 전국 국립공원의 37개 야영장 중, 10개 야영장에서 총 56개 영지를 '예비 영지'로 운영(공단 추계, '21.5월)

< 관련 민원 사례 >

- 국립공원 ○○자동차야영장을 예약한 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면서 야영을 하던 중, 비어 있어야 할 예비영지에 여러 가족들이 몰려와 야영 준비를 하였음.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, 그 가족들은 일반 예약자가 아니라 '공단 직원 및 가족들이며 직원복지 차원에서 예비영지를 이용'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음.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국립공원 시설을 특정 직원들만 이용하게 하여 일반 이용객의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이런 특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(국민신문고, 2020.9월)
-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소속 직원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야영장)이 있다면, 일반 예약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설 현황 등을 사전에 자세히 안내하여야 할 것임(국민신문고, 2021.5월)

□ 개선방안

○ 공단 내부 직원·가족 등의 예비영지 사용 제한

※ 예비영지의 운영 원칙, 운영 기준, 사용 제한 등 근거 마련

○ 야영장별 예비영지 운영 현황 공개

⇒ 국립공원 예약제 운영매뉴얼 또는 예약시스템에 반영

< 개정(안) 예시 >

현 행	개 선 안
<u><신 설></u>	<u><예비영지 운영 준수사항></u> 1. 공단은 야영장 시설물의 이상 등으로 특정 영지 사용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영지 이용객에게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예비영지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2. 예비영지는 야영장별로 전체 영지의 ○% 이내에서 운영한다. 다만, 전체 영지 수가 ○○개 미만인 야영장의 경우에는 예비영지를 운영하지 아니한다. 3. 예비영지는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이는 공단 내부 직원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. 4. 공단은 야영장 예약자 및 이용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예약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예비영지 운영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. 5. 6. . . .

※ 예비영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한 형식으로 추가·보완 또는 수정 가능

3 군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제도 운영의 형평성 제고

[국방부, 육군, 해군]

□ 군무원 채용시험 일반 현황

- 군무원(특정직공무원) 채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며, 예외적으로 경력 등 요건에 의한 경력경쟁시험*을 통해 선발(「군무원 인사법」 제7조)

* ‘직무관련 자격증·면허증 소지자’, ‘전역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채용 예정 분야 근무실적이 있는 자’ 등 동일 자격, 동일 경력자 간 경쟁을 통해 선발

- (채용 주관) 국방부, 육군, 해군(해병대 포함), 공군 인사부서

※ 시험공고일(매년 4월경), 시험일(매년 7월경) 및 시험 문제(필기)까지 4개 기관 모두 동일

- (채용절차) 공개경쟁채용 : 필기시험 → 면접시험
경력경쟁채용시험 : 서류전형 → 필기시험 → 면접시험

- (준용규정) 결격사유, 임용 및 시험 등은 국가공무원법령 준용

- 국방개혁 2.0 추진에 따라 비전투부대 민간인력 증원이 본격화되면서, 군무원 신규채용 인원은 급격한 증가 추세

<연도별 군무원 채용(계획) 추이>

(단위 : 명)

연 도	2018	2019	2020	2021
모집인원	1,280	3,961	4,139	6,490

※ 모집인원은 4개 기관(국방부, 육·해·공군)의 채용인원 합계

□ 문제점

- 채용시험 가산점 제도 운영의 형평성 저하

- '15년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을 통해 공무원 채용 시 의사자·의상자* 본인 및 배우자·자녀(이하 “의사상자등”)에 대하여 채용 시험 가산점** 제도를 도입·운영



* 의사상자는 연령별로는 '20대 청년', 직업별로는 '학생'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채용 가산점이 더욱 중요한 의미. 의사상자 수는 788명 수준('19년 기준)

** 전과목 40% 이상 득점자 중 가점 부여 대상별로 과목별 만점의 5%~3%를 가산 (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31조의2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56조)

- 군무원의 경우에도 준용 규정*을 통해 의사상자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제도적 근거가 갖춰짐에 따라, 공군의 경우 '19년 시험부터 의사상자등을 채용시험 가산점 적용 대상에 포함

* 군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「공무원 임용령」 및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을 준용(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7조제1항)

- 그러나, 시험 문제까지 공유하는 사실상 동일한 시험임에도 '국방부, 육군, 해군'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아 의사상자 예우·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, 채용기관에 따른 형평성에도 문제

<기관별 가산점 적용대상 비교>

국방부, 육군, 해군	공군
1) 적용대상 :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으로서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	1) 적용대상 : 좌동 +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

※ 채용기관별 '21년 공고문 내용 중 해당 사항 발췌

□ 개선방안

○ 기관별 군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적용대상 범위를 동일하게 운영

- 국방부, 육군, 해군의 경우도 의사상자등에 대하여 채용시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개선

⇒ 기관별 '군무원 채용 공고문'에 반영

< 개정(안) 예시 >

현 행	개 선 안
8. 가산점 적용 가. 취업지원 대상자 1) 적용대상 :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<u>가족으로서</u>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 2) ~ 4) (생략) 나.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가산 자격증·면허증 소지자 1) ~ 3) (생략)	8. 가산점 적용 가. 취업지원 대상자 1) 적용대상 :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<u>가족 및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6조의2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, 의사자 본인 및 의사자의 가족으로서</u>----- 2) ~ 4)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1) ~ 3) (현행과 같음)

Ⅲ.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

□ 대상기관 : 환경부, 국립공원공단, 국방부·육군·해군

□ 세부과제별 조치사항

과제명	조치사항	조치기한
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급 역차별 해소	○ 우선순위 기준에서 ‘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(유예포함)을 받은 차량’을 제외 ⇨ 「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」에 반영	2022.6. [환경부]
② 국립공원 시설 예약제도의 공정성 강화	○ 공단 내부직원·가족 등의 예비영지 사용 제한 ○ 야영장별 예비영지 운영현황 공개 ⇨ 「국립공원 예약제 운영매뉴얼」 또는 예약 시스템에 반영	2022.6. [국립공원공단]
③ 군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제도 운영의 형평성 제고	○ 기관별 군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적용대상 범위를 동일하게 운영 ※ 국방부, 육군, 해군의 경우도 공군과 같이 의사상자등에 대하여 채용 가산점 부여 ⇨ 기관별 ‘군무원 채용 공고문’에 반영	2022.6. [국방부, 육군, 해군]

정 본 입 니 다 .

2021. 12. 21.

국 민 권 익 위 원 회



A C B C